[별지 제1호서식]

<table>
<tr><td colspan="5">연계정보 생성·처리 승인신청서</td><td>처리기간
3개월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본인확인기관</td><td>기관명(또는 명칭)</td><td></td><td>전화번호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대표자 성명</td><td></td><td>생년월일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주소(주된 사무소)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인터넷 홈페이지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</td><td>기관명(또는 명칭)</td><td></td><td>전화번호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대표자 성명</td><td></td><td>생년월일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주소(주된 사무소)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인터넷 홈페이지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서비스의 종류</td><td colspan="5">□ 1.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
□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
□ 3.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 또는 제공·이용·대조·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</td></tr>
<tr><td>서비스의 명칭 및 주요 내용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1 (본인확인기관) (서명 또는 인)
신청인 2 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) (서명 또는 인)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귀하</td></tr>
<tr><td>첨부서류</td><td colspan="5">1. 조직·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
2.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정관 또는 규약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
4.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</td></tr>
</table>